# 畜産人을 위한 簿記要領

本紙는 기회있을 때마다 각계로 부터 資料를 입수하여 養畜家 여러분에게 각종 記錄및 記帳에 관하여 소개한 바있다.

이번 5월호부터는 畜産部門에 대하여 외국의 문헌등을 引用하여 「畜産人을 위한 簿記要領」을 수차에 걸쳐 계속 연재할 예정이니 硏究資料로서 혹은 實務應用에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임 덕 성
<대한양계협회 총무부장>

## Ⅰ. 序 言

우리나라 畜産이 소, 돼지 몇 마리 닭 몇 십수의 農家副業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星霜을 겪는 동안 그 零細性과 原始性으로부터 脫皮하여 近代化된 企業經營 形態로까지 발전되기까지, 그 이면에는 筆舌로는 다 할 수 없는 고초가 蓄積되어 있으며, 오늘의 이 결과는 피눈물나는 勞力의 結晶體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 政府의 畜産振興政策과 直稅및 租稅의 減免등 양축가를 위한 最大限의 支援에 힘입은 바가 큼은 물론이다. 그러나 畜産業이 우리나라의 重要産業의 한分野로 認定받고 또한 規制되어 稅減免아닌 免稅의 惠擇을 받을 수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一例를 들어 관련되는 稅金의 減免措置는 稅法上 時限附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양축가는 종래의 경험만으로서의 感覺的인 經營方式에서 벗어나 經營의 合理化가 要請되는 時代에 接하고 있다. 計數에 의한 經營成果의 客觀的把握은 단지 稅務對策에만 필요하다는 小義의 것이 아니라 危機에 處했을 때 이겨 나아갈 수 있는 科學的 經營能力을 높이는 手段으로서 不可缺의 것이기 때문이며 例를 들어, 畜産物 生産費(原價)를 基礎로 하여 對外 및 對內의 經營에 活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强한 武器로서 나를 保護하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Ⅱ. 記帳의 重要性

우리는 오랫동안 自身의 經營結果를 분명하게 把握하고 損益을 確實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고 여러가지의 記錄, 記帳方法과 여러가지의 簿記法을 硏究利用해왔다. 더우기 商法, 稅法에서 요구하듯이 企業의 規模, 去來外形의 限度에 따라 複式簿記, 簡易帳簿, 日記帳 等의 記帳이 義務化되고 있으므로 깊은 관심 속에 오늘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稅制가 綜合所得稅制로 變更됨에 따라 1975년도 畜産業에 對한 所得稅 減免申請을 뒷받침하는 綜合所得稅課稅標準確定申告 및 自進納付計算書를 作成屆出할 때 正確한 記錄이 없으므로해서 法人體가 아닌 많은 個人양축가가 당황하는 사례가 많음을 보았다. 무엇보다도 記帳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재삼 强調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納稅義務行爲를 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예견해야 될것으로 믿는다. 우리가 납부하여야 할 所得稅는 減免되었다고 할지라도 國民皆納의 防衛稅는 納付하고 있으며 이 稅額算出의 根據는 所得金額에 基因하므로 各者 틀림없는 計數가 밝혀졌는지는 當事者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脫稅는 惡行이지만 節稅는 善行이란 말이 있다. 卽 節稅란 내가 納付하여야 할 妥當性이 있으며 正確한 計數에 의한, 지나치지 않은 納稅를 뜻하는 것으로 본다. 過納의 愚를 犯하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記帳의 必要性과 重要性

을 느끼게 되었다. 지금까지 畜産에 關心있는 有能한 經理人과 양축가들이 여러 紙上을 通하여 記帳方法과 그 要領들을 發表 권장한 바 있으며 우리는 매우 有益하게 그것을 利用해 왔다. 그런데도 감히 이 紙面을 割愛받아 先進國의 關係서적을 引用하고 좁은 所見이나마 곁들여서 여기에 資料로써 提供코저 하는 本意는 養畜家 여러분의 硏究資料가 되고 實務面에 적용시켜, 여기서 얻어지는 成果가 적다손 치더라도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감사하기 때문이다.

## Ⅲ. 記帳의 準備

複式簿記의 原理에 대한 설명은 各種書籍이 있고 一般化 되어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1. 合計單位의 決定

부기는 어떤 범위의 經濟活動을 特定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去來만을 記錄, 計算하므로 우선 對象範圍를 決定해 두어야 한다. 畜産會計에 있어서 특히 問題가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畜産이 農業經營의 一部門으로서 存在하고 그 生産과 분리되어있지 않은 實態이기 때문이다. 즉 經營自體가 家計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混合된 狀態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記帳할 때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대략 記帳範圍의 設定方法을 살펴보면,

① 農家簿記(生産과 消費)…家計費를 包含한 農家經濟全體에 關하여 記帳한다.

② 農業簿記…家計와 분리하여 經營(生産)部門만을 記帳한다.

③ 畜産(部門)簿記…農業經營가운데서 畜産部門만을 記帳한다.

즉 一般農家에서는 經營과 家計의 완전분리는 불가능하다. 例를 들면 畜産物의 自家消費, 雇用者에 對한 食事提供, 또는 家計費로부터 經營費로의 立替 및 그 反對의 代拂 등 實際로 많은 去來現狀을 招來한다. 이런 때에는 특별한 計定科目을 設定하여 混同을 막을 수 있는 會計處理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後述). 그러므로 畜産業 자체의 經營을 目的으로 하는 畜産部門만을 限定한 上記③의 畜産(部門)簿記 方法이 要求되며 또한 권장하고 싶다. 이 경우 畜産만으로 記帳을 限定시키면 帳簿組織이 보다 單純化되고 보다 細密한 分析이 가능하다. 그러나 畜産의 種類가 몇 가지 합쳐 있다면 畜種別의 經濟性比較라든가 原價計算을 하기 위하여 部門間의 費用의 配分 等 여러 部門으로 이루어지는 農業簿記와 同質의 複雜性을 免치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畜産經營이란 여러 畜種의 複合이 아니고 酪農, 養豚, 養鷄等으로 分離化되어 가는 現狀을 참작하여 畜種別로 專門化한 畜産經營을 想定하고 그것을 會計單位로 하는 經理實務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말해둔다.

### 2. 會計期間의 設定

다음은 記帳의 時間的 單位를 決定하여야 한다.

농업은 1年單位의 季節生産이며 畜産에 있어서도 사료생산등 土地를 이용하는 酪農은 물론, 中小家畜에 있어서도 약간은 生産의 季節性이라든가 價格變動의 季節差 等이 있으므로 一年單位로 決算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畜産은 일반적으로 回轉率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六個月마다 假決算을 하고 後期에 對備하는 필요한 資料 등을 얻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따라서 記帳開始日을 어느 날자로 할 것인가의 決定에 依하여 決算期間이 設定되므로 다음의 몇 가지 點을 考慮하여 定하는 것이 좋겠다.

① 耕作을 수반하는 때에는 農繁期를 避하는 것이 좋겠고,

② 實査의 繁雜을 피하기 위하여 收穫期내지는 그직후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③ 稅務申告의 時期를 꼭 配慮함이 좋겠다.

例를 들어 果實樹作物 經營部門등에서는 結實期, 收穫期, 出荷期 等을 피하여 가급적이면 實査品이 적은 販賣終了後의 日字를 擇하도록 配慮하여야 하며 畜産에서는 飼料生産이 많은 經營部門에서는 未收穫作物의 實査評價를 피하기 위하여 冬季(年末)의 決算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個人의 경우는 稅法에 定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 1月부터 開始하여 12月까지의 所得計算을 하고 다음 해 2月末日까지 課稅標準確定申告 및 稅額을 納付하여야 하므로 12月末에 決算하지 않으면 안된다.

法人의 경우는 各事業年度終了日로부터 45日以內에 決算을 確定하여야 하므로 個人 法人을 망라하여 現實的으로 多季의 決算을 많이 택하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合理的이라고 보는 것이다.

### 3. 簿記株式의 選擇

여기서 말하는 부기양식이란 농가 부기, 농업부기, 축산부기 등의 區分이 아니고 計算株式에 의한 區分, 즉 單式이냐 혹은 複式이냐의 選擇을 말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인정되는 企業會計의 基準으로는 「企業會計原則」「財務諸表 등의 用語書式 및 作成方法에 關한 規則」 및 商法 第447條에 규정하는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 等의 요구가 있으므로 正規의 簿記原則에 의하여 정확한 會計帳簿를 作成하지 않으면 안된다.

卽 去來記錄이 客觀的이며 證明可能한 證據에 의하여 作成되어야 하며 記錄計算이 體系的으로 整然하여야 하며 企業의 財政狀態와 經營的成績이 명확하게 誘導되어 作成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一般的으로 單式簿記의 計算構造로서는 損益計算에 關해서는 體系的이고 계속적인 記錄, 計算, 集計 等이 可能하겠지만 財產計算에 있어서는 대부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거의 單式簿記는 正規의 簿記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통상 正規의 簿記는 企業의 社會的인 책임과 會計의 社會的인 任務에 對應하는 簿記이므로 法人經營은 당연히 複式에 의하여 正規의 簿記를 採擇하고 있으며 個人의 경우에도 農家 副業的인 畜產을 除外하고는 複式簿記에

※ **法人稅法 第62條**
※ **所得稅法 第184條**

<도표 1>

| 區分 | 複式簿記에 依한 帳簿 | 簡易帳簿 | 日記帳 |
|---|---|---|---|
| 記帳義務者 | ① 法人<br>② 事業者(不動產所得, 事業所得, 山林所得이 있는 者)<br>1. 當該年度의 直前年度의 收入金額의 合計額이 2억원 以上이 되는 者.<br>2. 운수보관 및 통신업중 보관업과 서어비스업 중 대리, 중개, 위탁판매, 운송주선 및 도급의 영업은 5천만원 以上이 되는 者 | 複式簿記 義務者 以外의 者로서<br>1. 當該年度의 直前年度의 收入金額의 合計額이 6천만원 以上이 되는 者.<br>2. 운수보관 및 통신업중 보관업과 서어비스업중, 대리, 중개, 위탁판매, 운송주선 및 도급의 영업은 1천 5백만원 以上이 되는 者. | 複式簿記 義務者 및 簡易帳簿義務者 以外의 事業者. |
| 備置帳簿 | 事業의 財產狀態와 其損益去來內容의 變動을 빠짐없이 二重으로 貸借平均하게 記錄하는 簿記形式에 依한 帳簿. | ① 現金出納帳<br>② 賣出帳 또는 收入帳, 買入帳<br>③ 經費帳 또는 이에 準하는 帳簿(形式如何不拘) | 日記帳 또는 이에 準하는 帳簿(形式如何不拘)<br>1. 現金賣出및 外上賣出帳<br>2. 買入 및 經費帳 |
| 記帳要領 | 複式簿記에 依한다.<br>資產, 負債, 資本에 關한 一切의 去來를 記帳 | 單式簿記에 依한다.<br>正規의 簿記처럼 完全할 수는 없으나, 收入支出을 正確하게 記帳한다 | 單式簿記에 依한다. |
| 記帳의 任意性 | | 複式簿記에 依한 帳簿備置 및 記帳을 할 수 있다. | 簡易帳簿 및 複式簿記에 依한 帳簿備置 및 記帳을 할 수 있다. |

의하여 처리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왜냐하면 商法과 稅法은 소위, 正規의 簿記를 요구하고 있을 뿐더러 實務面에 있어서도 記錄, 計算, 集計 等에 의한 單式處理는 그것이 誠實計帳을 하였다고 自負하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財産計算의 어려움의 發生이라든가 稅務關係者의 實査기피현상 등을 招來(參考資料로는 하겠지만)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企業擴張의 將來性을 고려하여 미리 複式簿記에 依한 記帳訓鍊을 쌓아 두는 것도 意義있는 일이라 하겠다. 稅法에 定한바에 의한 帳簿備置 및 記帳義務는 〈도표 1〉과 같다.

### 4. 財産目錄의 作成

會計期間이 결정되면 其 事業年度의 初日現在로 「財産目錄」을 作成한다.

財産目錄은 其事業이 소유하는 資産과 負債를 種類別로 物量, 價額 等으로 表示한 것이므로 資産및 負債의 現在額이 把握되면

資産－負債＝資本…(資本等式)

에 의하여 同時에 其 事業體의 資本金(財産額)을 나타낼 수 있다. 財産目錄은 통상 決算時의 貸借對照表의 說明資料로서 作成되며 財務諸表의 一環을 이루고 있으나 여기서는 처음으로 記帳을 개시하는 양축가를 위해서 新規記帳때의 財産目錄作成에 관하여 말하고자 한다.

期初財産目錄은 期初貸借對照表 作成을 위한 基礎資料이므로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上의 數値는 일치하여야 한다.

財産目錄은 實地의 財産調査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其 作成順序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① 記帳 對象이 되는 財産範圍의 決定
② 財産의 種類別 物量調査및 評價額 決定
③ 財産合計額에서 負債合計額을 控除한 自己資本金의 決定

財産目錄은 貸借對照表와는 달라서 其 內容을 具體的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摘要에는 物量, 所在 等을 記入하고 內容이 複雜한 것은 別紙明細書를 添付하는 것이 좋다〈도표 2〉.

〈도표 2〉 財 産 目 錄 (例)

개나리養鷄場 1976年○月○日

| 摘 要 | | 金 | 額 |
|---|---|---|---|
| 資産의 部 | | | |
| 가. 流動資産 | | | |
| ① 現金과 預金 | | | ××× |
| | 現金 | ××× | |
| | 當座預金(S農協) | ××× | |
| | 普通預金(H銀行) | ××× | |
| ② 받을어음 | 別紙明細書 | | ××× |
| ③ 外上賣出金 | 〃 | | ××× |
| ④ 有價證券 | 〃 | | ××× |
| ⑤ 鷄 | 〃 | | ××× |
| ⑥ 飼料 | 〃 | | ××× |
| ⑦ 包裝材料 | 단보一르 箱子 | | ××× |
| ⑧ 未販賣生産物 | 鷄卵 | | ××× |
| 나. 固定資産 | | | |
| ① 土 地 | 別紙明細書 | | ××× |
| ② 建 物 | 〃 | | ××× |
| ③ 什器備品 | 〃 | | ××× |
| ④ 機械器具 | 〃 | | ××× |
| ⑤ 車輛運搬具 | 〃 | | ××× |
| 資 産 總 計 | | | ××× |
| 負債의 部 | | | |
| 가. 流動負債 | | | |
| ① 支給어음 | 別紙明細書 | | ××× |
| ② 外上買入金 | 〃 | | ××× |
| ③ 短期借入金 | S農協 | ××× | ××× |
| ④ 未支給金 | K會社未拂金 | ××× | ××× |
| 나. 固定負債 | | | |
| ① 社 債 | | | ××× |
| ② 長期借入金 | S農協 | | ××× |
| 負 債 總 計 | | | ××× |

### 5. 畜産經營의 財産

流動資産은 통상 一年以內에 交替하는 資産을 말한다. 當座資産은 其 自體가 貨幣額을 가지고 있으므로 支拂資産이라고도 말하며 評價한 필요가 없다.

實査資産은 商品製品, 原材料, 在工品, 半製品 等의 製造販賣資産이다. 賣却, 消費를 목적으로 하는 資産이며 短期間에 바꾸어 現金, 어음과 같은 다른 當座資産으로 移轉된다. 其 自體가 評價額을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畜産經營의 財産을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 財産
  - 資産
    - 流動資産
      - 當座資産 {現金, 預金, 받을어음, 外上賣出金, 未收金, 短期貸付 金 等.
      - 實査資産 {飼料, 肥料, 農藥, 家畜藥品, 種子 産卵用育雛, 育成豚, 育成牛, 엔시레지, 깔짚, 乾草, 未收穫作物 生産物(鷄卵) 肥育豚, 肥育牛, 부로이러 等.
    - 固定資産
      - 有形固定資産 {乳牛, 繁殖牛, 産卵鷄, 繁殖豚(모두 成畜) 農機具, 什器備品, 車輛 畜舍, 事務室 構築物, 土地, 建物, 建物假計定 等.
      - 無形固定資度 {營業權, 特許權, 地上權, 賃借權, 傳貰權 等.
      - 投資資産 {有價證券, 出資金, 長期貸與金 等.
    - 移延計定…… {創業費, 關業費, 試驗研究費 等.
  - 負債
    - 流動負債…… {支拂어음, 外上買入金, 短期借入金, 未支給金, 先受金, 預受金, 未支給費用 等.
    - 固定負借…… {長期借入金, 充當金 等.

※ 有形固定資産의 産卵鷄는 經理處理上 實査資産으로 取扱하는 것이 合理的인 때도 있다.

期末에 이르러 物量, 員數를 點檢하여 評價額을 부여하게 된다(實査).

固定資産은 원칙적으로 一年以上의 長期에 걸쳐 反復使用하는 資産이며, 其 價値가 감소되는 資産은 減價償却을 하여 減少額만큼 費用으로 計上한다(償却資産). 또한 價値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土地와 같은 것은 非償却資産이다.

固定資産은 有形과 無形으로 分類하고 無形固定資産이라해도 一定年限으로 其 權利가 消滅되는 때에는 其 年數로 償却하는 償却資産이 된다.

移延計定은 事實上 費用의 未償却分이며 例를들어 創業費와 같은 移延資産은 商法 第290條 第4項의 規定에 依한 支出과 設立登記를 위하여 支出한 稅額 및 登記手數料를 말한다(一定한 償却方法에 依하여 償却)

流動負債는 통상 一年以內에 返濟할 수 있는 負債를 말한다. 固定負債는 통상 返濟期間이 一年以上인 것을 말 한다. 畜産經營이 資産分類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家畜의 分類에 있다고 보겠다. 우리나라 稅法에서는 牛, 馬, 豚, 면양및 양으로만 大別하여 固定資産으로서의 耐用年數를 定하고 있을 뿐이며, 事業別 固定資産耐用年數表에도 畜産業에 對하여는 規制된 것이 없다. 參考로 日本의 것과 比較하면 다음과 같으며 後의 償却實務에서 論하기로 한다. (계속)

**牛馬, 果樹의 使用 또는 收穫可能年數表**

(果樹部分생략)

| 種類 | 用途 | 細目 | 耐用年數(使用) 日本 | 韓國 |
|---|---|---|---|---|
| 牛 | 農業使役用 | | 6年 | 6年 |
| | 小運搬使役用 | | 5 | |
| | 繁殖用 | 役肉用牛 | 5 | |
| | | 乳用牛 | 6 | |
| | 種付用 | 役肉用牛 | 4 | |
| | | 乳用牛 | | |
| | 其他用 | | 6 | |
| 馬 | 農業使役用 | | 8 | |
| | 小運搬使役用 | | 6 | |
| | 繁殖用 | | 7 | |
| | 種付用 | | 6 | |
| | 競走用 | | 4 | 4 |
| | 其他用 | | 8 | 8 |
| 면양및양 | 種付用 | | 3 | 5 |
| | 一般用 | | 5 | |
| 豚 | 種付用 | | 3 | 3 |
| | 繁殖用 | | | |